EU 도입 'REACH법', 경제 발목 잡는 무역장벽 되나?

글 | 유호 환경부 화학물질과 서기관 hoyu2004@me.go.kr

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가정용 세정제에서 첨단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함에따라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의 대량 생산 및 사용은 세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재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40여개의 화학물질관련 법규를 통합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법'을 도입하였다. 2006년 12월 18일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절차인 사전등록이 당장 올 6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등록 대상 물질 파악 및 등록자료 준비 등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REACH법 도입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DDT(제초제)나 PCB(변압기 절연유)의 사용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REACH는 이러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적측면에서 보면,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화학물질을 사

용하여 생산된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섬유, 완구 등의 완제품에 대한 규제를 새로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REACH는 현재까지의 환경을 매개로 한 무역장벽 중에서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수입 화학물질 정보등록 의무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법은 EU에서 제조되거나 EU 내로 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제조·수입자가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특히 REACH는 일부 화학물질이나 제품에 국한된 EU의 전기·전자 제품 내 6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이나 EU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지침(WEEE)과는 다르게, 모든 화학물질 및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장한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힌다.

REACH법 시행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책임이 과거 정부 주도에서 기업(제조/수입자)에게로 완전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1년 9월 이후 EU시장에 출시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요구되던 위해성 정보 신고 제도를 기존화학물질에도 확대시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간의 차별을 없앰으로써 EU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REACH법은 크게 사전등록, (본)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REACH 규정 하의 기존화학물질이

	REACH 시행 전(1981 ~ 2007. 5)	REACH 시행 후(2007.6~)
대상 물질	- EU내 제조 · 수입되는 신규물질 (10kg/년 이상) ※ 1981년 이전부터 EU에 유통된 기존물질 (약 10만종)에 대해서는 규제 부재	- EU내 제조·수입되는 신규물질 및 기존물질(1톤/년 이상) -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주요규제내용	- 제조·수입업자가 인체, 생태에 대한 위해성정보 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시장출시 허용	 제조·수입업자가 인체, 생태에 대한 위해성정보 등을 등록한 후 시장출시 허용 고위험성우려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잔류성 등)은 용도별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 * '허가'제도 도입으로 대체물질 개발 유도
등록(신고)주체	- EU내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독점 대리인(Sole Representative)	- EU내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등록방법	- 개별 등록	- 공동등록(동일물질 제조·수입자간)
등록기관	- EU 회원국 대응당국(CA)	- 유럽화학물질청(ECHA) ※ 2007년 6월 개청

REACH시행 전후의 EU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비교

대상이며, 사전등록 기한(2008년 6월 1일~12월 1일까지) 내 물질 명, 등록예정자, 예상 등록시한 등 정해진 기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면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동물실험 등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동일물질의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내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공동(본)등록이가능해지고,물질의 양과 유해성에 따라(본)등록기간 유예를 최대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전등록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않은 기업은 등록기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등록 준비기간이촉박해지고 아울러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내 정보공유 기회를상실함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능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사 수출제품 내 화학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등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

사전등록 후 (본)등록은 사용량과 위해성에 따라 2018년까지 단 계적으로 실시되며,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평가 과정을 거쳐 등록 승인을 받거나 위해성 우려가 높은 물질의 경우 허가 또는 제한 조치를 별도로 받게 된다.

기업으로 평가주체 이전, 대체물질 사용 촉진

REACH 제정 목적과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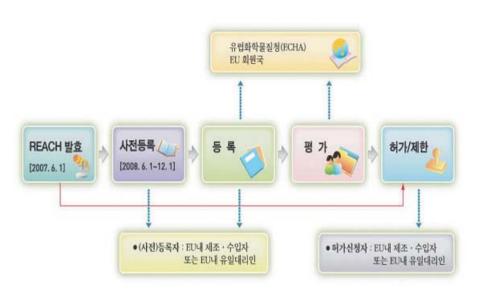
가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다는 것이다. REACH법 이전에 EU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지역 각국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사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왔는데 유해성 검사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있는 10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화학물질의 개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EU 지역에서 유해물 질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도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 국가들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제조, 수입하는 기업에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하거나 위

해하지 않다는 입증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REACH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화학물질의 평가 의무가 정부당국에서 산업계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EU 정부당국의 규제조치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체물질 및 신규물질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EU 지역에서는 REACH법 시행 전에는 화학물질을 2종류로 구분해서 관리해 왔다. 1981년 9월 18일 이후에 출시된 화학물질들은 '신규물질'로 규정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출시에 앞서 그 유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데이터를 요구했다, 반면, 1981년 9월 18일 전에 출시된 화학물질은 '기존물질'로 규정하고, 신규물질과 달리 유해성에 대한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왔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규제조치로 인하여 기업들이 유해한 기존물질을 대체할 물질 개발이나 신규물질 개발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EU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REACH법에서는 신규물질과 기존물질에 대한 규정을통합하여 기존물질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신규물질에 대한 의무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위해성이 높은 기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개발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신규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RFACH 이행절차

셋째, 평가의 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REACH 법제도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화학물질의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화학물질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수입, 사용, 판매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는 전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그 화학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들만을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위해성이란 그 화학물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물질의 사용량과노출조건을 비롯한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해당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REACH 법제도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화학물질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물질특성만으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노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등록 반드시 참여 후 본등록에 대처해야

기업들이 REACH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 포기하지 않고 REACH에 대응하겠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아직 REACH가 본격

적으로 가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REACH에 대응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물질 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주장들이난무하여 기업들은 도저히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ACH에 대응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들지 정확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예상되고 있는 비용보다는 적게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REACH의 제정 목적이 유해한 물질의 사용제한을 통해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덜 유해한 물질의 개발을 유도하고 각국 정부가 물질 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EU는 REACH의 정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EU의모든 해당 업체들이 REACH 법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REACH 대응에 과도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 수출지를 변경할수있는 EU 지역 밖의 기업들보다 EU 지역 내의 기업들이 더 타격을입게 되므로 EU 당국은 어떻게든 REACH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나라 기업들은 REACH 법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적극적으로 REACH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ACH에 대응하는 첫 관문이 바로 사전등록 절차이다. 기업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REACH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후에 EU 당국이 REACH 법제도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기업들은 사전등록 절차에 반드시 참여한 후 기업의 사정과 EU 당국의 REACH 법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 본등록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❸①



글쓴이는 미국 웁살라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생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금강환경관리청,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등을 거쳤다.